

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

제 1 조(적용)

이 특수조건(이하 “조건”이라 한다)은 통영적십자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이 집행하는 의료장비 등 물품의 구매·제조·공급 및 설치 계약에 적용한다.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계약예규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일반조건」, 입찰공고문, 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- ① “병원”이란 대한적십자사 소속 통영적십자병원을 말한다.
- ② “계약담당자”란 병원장 또는 병원장으로부터 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.
- ③ “계약목적물”이란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장비, 부속품, 소프트웨어, 설치·시운전·교육 등 계약이행에 포함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.
- ④ “검사”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, 계약서, 규격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병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“검수”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수량·구성품·외관 등에 이상이 없고 정상적으로 설치·가동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(계약보증금)

-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 4 조(포장·운송 및 반입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운송·보관·반입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, 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포장, 운송, 하역, 병원 내 반입, 설치장소까지의 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반입 전 병원 담당부서와 반입일정, 동선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5 조(납품·설치·검사 및 검수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·설치하고 정상가동 상태에서 병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② 검사·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, 성능 이상, 파손, 누락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환·보완·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목적물의 멸실·훼손 등 모든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- ④ 계약목적물의 운송, 설치, 시운전, 성능확인, 교육 및 정상가동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제 6 조(제품의 품질·규격 및 변경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, 입찰공고문, 규격서 및 제안서에서 정한 품질·성능·구성품·제조사·모델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
- ② 납품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증·신고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입찰공고문 또는 규격서에서 제조일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모델, 규격, 구성품 또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다.
- ④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의 제·개정, 제품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변경 제품은 당초 계약조건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추가비용 발생 여부는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인허가 및 관계 법령 준수)

-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「의료기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·인증·신고 및 유통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별도의 신고·검사·측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, 손해 또는 추가비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제 8 조(납품기한)

- 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 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의 납품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우선 적용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예정일을 사전에 병원과 협의하여야 하며, 병원의 진료 및 수술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지체상금)

-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.
- ② 지체일수 산정 시 병원의 검사·검수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와 예상 납품일을 즉시 서면으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납품기한 경과 등에 따른 조치)

-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·해지, 계약보증금 귀속,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·처분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기간 내 집행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설치 및 안전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·설치 과정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상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의 통제, 안전보호구 착용, 낙하·감전·충돌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, 병원의 안전관리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설치 과정에서 병원 시설물 또는 타 장비를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교육·매뉴얼 및 인수인계)

-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의료진 및 관련 직원에게 사용법, 안전사항, 일상점검 및 기본적인 장애대응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한글 사용자 매뉴얼, 유지보수 연락처, 품목별 구성품 명세 및 병원이 요구하는 인허가·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제 13 조(하자보수 및 무상보증)

- ①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 년 이상으로 하되, 입찰공고문·규격서·제안서 또는 제조사 보증조건에서 더 긴 기간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한다.
- ② 무상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점검·수리·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무상하자보수의 범위는 장비 본체와 정상운용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·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. 소모품의 무상 제공 범위는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④ 장비의 정상가동이 어려운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, 대체방안 등을 병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유지보수 지원)

-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유지보수 약약서, 인력현황,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무상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서 확약한 기간 동안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대가의 지급 및 비용할인)

- ① 대가는 검사·검수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를 받은 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.
- ② 계약상대자가 의료기기 공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「의료법」 및 의료기기 유통·판매질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.
- ③ 제 2 항의 비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.

구분	1 개월 이내	2 개월 이내	3 개월 이내
비용할인율	1.8% 이하	1.2% 이하	0.6% 이하

- ④ 비용할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회계·세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 16 조(부정행위 및 환수·손해배상)

-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·위조·변조 서류 제출, 원산지 허위표시,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, 직접생산 조건 위반, 담합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, 부당이득 환수, 손해배상 청구,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환수 또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지급할 계약대금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 17 조(계약의 해제·해지)

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·설치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허가·인증 등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
4. 지체상금이 관계 법령상 계약해제·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에 달한 경우
5. 그 밖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제 18 조(담합 등 공동행위 금지)

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 사전협의,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담합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입찰의 무효·취소,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19 조(특허권 등 지식재산권)

계약목적물의 공급·설치·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 등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해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정보보호 및 비밀유지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정보, 병원 내부정보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네트워크 연결 또는 환자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장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보안설정·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불공정 행위 금지)

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금품·향응 제공, 알선·청탁, 특정 정보의 부당한 요구, 하수급인 또는 자재·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입찰·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
제 22 조(계약서류의 해석 및 우선순위)

-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1.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
2. 입찰공고문
3. 물품구매 규격서 및 병원이 승인한 제안내용
4. 물품구매(제조)계약 일반조건
5. 물품구매(제조)입찰유의서

- ② 계약서류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석하여 이행하지 말고 사전에 병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)

경쟁입찰의 결과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병원의 계약체결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납품장소)

납품장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, 통영직십자병원 BMD 실로 한다. 다만, 장비 설치계획에 따라 병원이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.

제 25 조(재판관할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,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영적십자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.